

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[변경]

의안 번호	143
----------	-----

제의일자 : 2020. 9. 1.

제 의 자 : 의 장

1. 주 문

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가. 구성목적

- 1)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
- 2)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
- 3)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

나. 위 원 수 : 15명

다. 활동기간 : 2020. 9. 1.(화) ~ 9. 4.(금) [4일간]

2. 제안이유

양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임.

3. 관계법규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

나.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

다.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